

예산총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7,404,201	11,022,126
일반회계	320,949,471	9,628,484
특별회계	46,454,730	1,393,642
공기업특별회계	41,190,044	1,235,701
상수도공기업	16,574,554	497,237
하수도공기업	24,615,490	738,465
기타특별회계	5,264,686	157,941
의료급여기금운영	1,174,748	35,24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205,540	6,166
수질개선	461,739	13,852
농공지구조성사업	361,287	10,839
공영개발사업	429,291	12,87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1,526	3,346
주택사업	1,995,271	59,858
기반시설	17,321	520
장기미집행	507,963	15,23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54,09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5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